

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216324(본소), 2023나216331(반소) 판결 [건물명도 등 · 공사대금]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216324(본소), 2023나216331(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18가단2488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변론 종결 2024. 5. 28.

판결 선고 2024. 8. 1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18가단24889(본소), 2019가단125413(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3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3.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86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317,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86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2023. 5. 23.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지상 5층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E호에 관하여 2017.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남편인 F를 통해 이 사건 빌딩 중 1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G(대표자는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고, 위 공사는 2017. 7. 말경 종료되었다(2017. 6. 30.경 위 공사대금 13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4.부터 같은 해 9. 1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2,8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9.자로 위 E호 일부(약 10평으로 H호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420,000원, 임대차기간 2019. 9. 9.까지 2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7. 9. 9.부터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20. 11. 30.경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7. 10. 1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거주기간 중 사용한 도시가스의 요금 총 731,290원을 대납하였다.

바. 2017. 10. 15. 원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① 총 공사비 120,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실행공사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G에 직접 지급하고, ② 인테리어 가구분 55,000,000원, 전기조명비 10,000,000원, 타일재료비 7,500,000원, 간판비용 4,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각서가 작성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12. 7.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호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빌딩 E호를 (주)N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호에 관하여 (주)N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67,4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2017. 9. 9. 원고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임대료 약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1. 30.까지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15,586,54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호실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한 가스요금 731,2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전기료 및 도시가스 이용료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호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도록 한 점은 다툼이 없다.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가 진정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임료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2년간의 무상 거주 약정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입주일부터 2년이 도과한 2019. 9.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호실을 사용·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처럼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N에 신탁된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은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대내외적으로 (주)N에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권은 (주)N이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3다6211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7호증(신탁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담보신탁계약으로, 그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제9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에는 불법점유의 예방, 제거도 포함되며(특약사항 제5조 제1항), 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관리업무만 수행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특약사항 제5조 제3항)고 약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보신탁은 채권담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탁자가 위탁자인 채무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서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을 사용·수익하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이러한 담보신탁의 내용과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대해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관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위탁자가 할 수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전관리행위에 불법점유의 예방, 제거가 포함되어 있을 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은 신탁수익이므로(제5조 참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도 신탁수익으로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그 수익자(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임)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인 점(제16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상태로 계약이 유효하여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을 위탁자가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0조 제1, 2항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득해야 하고(제10조 제3항),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령할 수 있다는 약정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N과의 관계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제3자인 침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약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채권적 권능으로서의 점유·사용권일 뿐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사용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예컨대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한 점유·사용권을 제3자로부터

침해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차임 상당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 차임 상당 손해는 임대인에게 발생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대납한 가스요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0. 1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거주기간 중 사용한 도시가스의 요금 총 731,290원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73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요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73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내용

G의 대표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고, 그 공사비용이 88,664,228원으로 감정 평가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2,8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864,228원(= 88,664,228원 -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는 G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에게 이 사건 공사비 정산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빌딩 중 1층 인테리어 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G에게 도급을 주었고 위 공사가 마무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8.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132,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I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실행공사비는 50,000,000원이고 위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2019. 7. 11.자 준비서면 제1면에서 자백한 바 있는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백의 취소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이 사건 정산 합의로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이행합의각서)에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 120,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했었다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의 위 2021. 8. 10.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G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가 아니라 I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2017. 7. 말경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2017년 상반기 무렵 G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2, 을 제9, 16,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상반기 무렵 G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7. 3. 8. 발급된 G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도 피고{구체적으로는 "B(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좌는 G의 사업자 통장으로 보인다}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7. 6.경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공급자인 G의 대표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② I가 관련 사건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8. 5. 18. 작성한 바 있는 사실확인서에 "I는 G(대표자 B)의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이 사건 정산 합의로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1심법원에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이행합의각서)에 의하더라도 G의 대표이사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I는 'G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이 사건 공사에 참여했던 하수급업체의 대표자들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 G의 대표자가 피고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5. 24.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2,8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4.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간판공사의 공사금액은 4,600,000원인데, 그 4,600,000원 중 원고가 1,800,000원을 직접 간판공사를 한 업자인 김풍호에게 (2017. 7.경) 지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1,800,000원을 원고가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잔금인 77,400,000원(= 132,000,000원 - 52,800,000원 - 1,800,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35,864,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산 합의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인 G의 실질적 대표자를 피고로 보더라도, I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이 사건 정산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공사대금은

5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상인 5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I의 대리행위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산 합의 체결 당시 I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I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I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I가 'G 대표이사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행합의각서)의 기재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인 F(원고의 남편)와 I 모두와 피고는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피고는 I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I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고 F로부터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원고와는 서로 형사고소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위 합의각서에 작성일이 2017. 10. 1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공사대금 변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작성시점의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정들만으로는 I의 적법한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불과한 I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합의의 효력이 본인인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피고가 자인하는 변제 금액 외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직불대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가구대금 55,000,000원, 전기조명비 10,000,000원, 타일재료비 5,700,000원, 간판비용 4,500,000원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들도 모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지급액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에 포함된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액 중 피고가 구하는 35,864,2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역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수정

판사유현정

판사강애란

1) 원고는 제1심법원에 제출한 "피고가 주장하는 대전시 D빌딩에 대한 공사대금 120,000,000원, 부가세 10% 12,000,000원 도합 132,000,000원에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2019. 7. 11.자 준비서면을 2019. 7. 18.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